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412406 합의금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재현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소영, 정찬호, 김준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김남우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그룹에 속해있는 회사로 원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이 있는데, 그 중 원고는 경영 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전 중구 H 대 3,421㎡ 외 3필지 및 그 지상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회사이다.

3) 피고 B은 G의 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G의 주주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G의 공동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G의 주주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5. 7. 16.부터 2016. 3. 2.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G의 우선주식 인수계약 체결 및 F과 G의 대출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7. 3. 23. G와 사이에, 원고가 G 발행의 상환우선주A 5만 주와 전환상환우선주B 1만 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만 원 합계 6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식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제2조(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			
G는 아래와 같이 별첨과 같은 내용 및 조건의 상환우선주A 및 전환상환우선주B(이하 총칭하여 '본건 주식')을 본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발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종류	주식 수	주당 발행가액	총 발행금액
상환우선주A	50,000주	10,000원	500,000,000원
전환상환우선주B	10,000주	10,000원	100,000,000원
제6조(투자종결의 선행조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는 투자종결일에 납입의무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vii) 원고와 G의 기존 주주들인 K, I, J 및 (주)L 간의 주주간계약이 본 계약체결일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ix) G와 원고 간에 24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이 본 계약체결일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별첨			
본건 주식의 내용 및 조건			
1. 상환우선주A의 내용 및 조건			
(1) 기본사항			
(가)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우선주식 총 50,000주			



(나) 발행인: G

(다) 납입일: 2017. 3. 23.

(라) 발행일: 2017. 3. 23.

(마) 액면금액: 5,000원

(바) 총 발행금액: 500,000,000원

(사)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아) 1주당 의결권: 있음

(2) 상환에 관한 사항

(가) 상환권자: 주주 및 G가 각각 상환권을 가짐

(나) 상환가액: 1주당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4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기배당금액은 차감한다.

(다)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가)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연 400%(이하 '우선배당률')

(4)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G의 청산 등 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날을 상환일로 보아 위 (2) 상환에 관한 사항에서 산정된 상환가격만큼 G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B와 동 순위로, G가 발행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

2. 전환상환우선주B의 내용 및 조건

(1) 기본사항

(가)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우선주식 총 10,000주

(나) 발행인: G

(다) 납입일: 2017. 3. 23.

(라) 발행일: 2017. 3. 23.

(마) 액면금액: 5,000원

(바) 총 발행금액: 100,000,000원

(사)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아) 1주당 의결권: 없음

(2) 상환에 관한 사항

(가) 상환권자: 주주 및 G가 각각 상환권을 가짐

(나) 상환가액: 1주당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4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기배당금액은 차감한다.



(다)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권자: 주주

(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비율: 전환상환우선주B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2주

(4)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가) 우선배당률: 1주당 발행가액의 400%에 달할 때까지 우선배당

(5)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G의 청산 등 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날을 상환일로 보아 위 (2) 상환에 관한 사항에서 산정된 상환가격만큼 G가 발행한 상환우선주A와 동순위로, G가 발행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

원고는 2017. 3. 23.경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G에 주식인수대금 6억 원을 납입하였고, 그 무렵 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

2) F은 2017. 3. 23. G와 사이에, F이 G에 24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8. 3. 23.로 정하여 대출해주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에 24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3)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전 G의 주주 구성은 K 보통주 13,800주, I 보통주 15,600주, J 보통주 15,600주, 주식회사 L(2017. 11. 7. 상호가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다. 이하 'M'라 한다) 보통주 15,000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원고가 G의 주주가 되면서 원고는 2017. 3. 23. 기존 주주들과 사이에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5-1조 (2)항에 따라 그 무렵 원고가 지명한 N이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주간계약

제5-1조 이사선임권-투자대상회사(G, 이하 같다)

- (1) 당사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를 4인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종결일 전까지 SI(기존 주주들, 이하 같다)가 지명한 자 중 3인, FI(원고, 이하 같다)가 지명한 자 중 1인이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2) 투자대상회사의 대표이사는 2인의 공동대표이사로 하며, SI가 지명한 이사 중 1인, FI가 지명한 이사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5-2조 동의권

- (1) 투자대상회사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FI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SI는 FI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자신이 선임한 이사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1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17. 상법 및 정관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 기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G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G는 2017. 3.경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 진행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 입찰하여 2017.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같은 날 O과 사이에, G가 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8,00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800,1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잔금 43,200,9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79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에 계약금 4,80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O은 2017. 11. 13. G에 'G가 잔금의 지급기한 및 계약해제 유예기한까지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4,800,100,000원을 전



액 몰취하였다.

3) G는 2018. 7. 11. 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745호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29.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5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2. 'O은 G에 1,920,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G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다253379호), G가 이에 부대상고를 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 및 부대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G와 P 주식회사의 합의서 작성 등

1) G는 2018. 8.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새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고 P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그 특수목적법인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2018. 10.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마. 원고와 G의 합의서 작성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각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8. 11. 13. G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갑'(원고, 이하 같다), '을'(G, 이하 같다)은 2018. 11. 13. '을'과 Q간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의 상기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에 있어 '갑'이 보유한 담보 및 투자금, 채권관계의 양수를 허가하고,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협조한다.
2. '을'은 상기 1항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변제 및 투자금반환 지연, '갑'의 협조사항에 대한 합의금으로 아래의 금원을 지급한다.
 - 지급금액: 10억 원
 - 지급일자: 2018년 12월 26일 限(당 사업의 PF 기표 완료 후 1개월 이내)
3. '을'은 위 합의금 및 합의금의 지급시기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Q 대표이사 피고 B 및 당 사업의 주주인 피고 C,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한다.
4. 단, 위 합의금에 대하여는 '을' 및 Q의 원활한 잔여 채무변제가 이행될 시에 상호 합의하에 추후 지급받아야 하는 배당금에서 상계·차감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은 2018. 11. 13.경 원고 및 F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연대보증각서

F, 원고 귀중

1. 하기 연대보증인들(피고들,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보증채무의 내용
 - 가. Q가 귀사에 발급한 2018. 11. 12.자 약속서에 따라 귀사에 부담하는 채무
 - 나. G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 원리금 채무 중 10억 원을 PF 대출금 기표 완료 후로부터 한 달 이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
3. 연대보증인들은 위 2항 기재 보증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3) Q는 2018. 11. 13. 원고 및 F에 'Q는 G가 원고 및 F에 대하여 추후 분쟁의 방지를 위해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갖고 투자금반환 및 채무를 변제하며, Q는 투자금반환 및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약속서



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 등

1) 이후 Q의 P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은 무산되었다.

2) O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R가 위 공매에 입찰하여 2019.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같은 날 O과 매매대금을 43,6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R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G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 G와 Q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변제 및 투자금반환 지연, 원고의 협조사항에 대한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원고에게 2018. 12.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함으로써 G의 원고에 대한 위 합의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는 PF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채무인데, 이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G의 주주인 원고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상법 제46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3)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의 피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는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407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지급일자 부분의 '2018년 12월 26일 限' 옆에 '당 사업의 PF 기포 완료 후 1개월 이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 제2의 나. 항에도 'G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 원리금 채무 중 10억 원을 PF 대출금 기포 완료 후로부터 한 달 이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가 O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 계약금을 몰취 당한 후 O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었고, G의 2018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G는 2018. 12. 31. 기준 유동자산으로 불과 100,988,423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G가 2018. 8.경 P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P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이상, G가 원고에게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할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G는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는 PF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채무로 봄이 타당한데, 이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의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서상 당사자는 원고와 G인데, 원고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신주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G의 주주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G의 주주 지위에서 G와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는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변제 및 투자금 반환 지연, 원고의 협조사항에 대한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기간(2017. 3. 23.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및 F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G에 대출해준 24억 원의 변제기(2018. 3. 23.)가 도래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중 '투자금반환 지연'은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상환 지연을, '채무변제 지연'은 G의 F에 대한 대출금 변제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원고가 G 주주 지위에서 입게 되는 손실 및 F이 G에 대한 채권자로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상 당사자로 원고와 G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볼 때 G가 특정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



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는 원고가 상환우선주주로서 의결권, 상환권, 이익배당권 및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전환상환우선주주로서 상환권, 전환권, 이익배당권 및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은 위 의결권, 상환권, 전환권, 이익배당권, 잔여재산 분배권과 무관하고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이다.

비록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의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로서 G가 발행한 다른 주식들인 보통주와 그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기는 하나, 상법 등 관련 규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다른 주식들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 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별도의 수익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여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거나 이미 조달한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만들게 된다.

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의 주주 구성은 K 보통주 13,800주, I 보통주 12,600주, J 보통주 12,600주, M 보통주 15,000주, S 보통주 6,000주, 원고 우선주 60,000주로 되어 있었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K, I, J, S의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M도 G의 주주였던 이상,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모든 주주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에는 원고가 주주 지위에서 입



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F이 채권자로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중 원고가 주주 지위에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부분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 중 F이 채권자로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 부분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G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납입한 자금이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G의 주주가 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원고가 G 주주 지위에서 입게 되는 손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G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에 대해 부종성이 있는바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서지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02

판사 권가희